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 11. 30(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5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11. 6

라. 상정일자

【2009. 11. 25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등 건설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하철 및 도로 건설사업 등 인천시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코자
-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체 18건 496,753백만원으로

-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어린이과학관건립, 검단우회도로 ~오류지구간 도로개설, 신흥동삼익APT~동국제강간 도로개설,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연희공원조성, 월미공원조성 등 10건 75,553백만원이고,
- 기타특별회계사업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사업 등 4건 387,000백만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공촌·갈산분구 하수관거정비, 월미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4건 34,200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2010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총 4,967억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2,900억원 범위를 초과하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지방채 3,500억원과 인천어린이 과학관건립 사업 등 15개 사업에 1,467억원을 포함 총 4,967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 2010년도 인천시 본청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 2008년 일반재원(28,997억원)의 10%인 2,900억원

참고)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 등

○ 지방채 발행 차입선 결정과 관련

-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 정부자금 배정 승인 외의 자금은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자금과 금융기관자금 등이 있으며 민간자금의 경우 유리한 발행조건으로 발행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등 3개 사업의 경우 기채선이 민간자금(금융기관자금 등)으로 되어 있는바 시금고 등 금융기관과 우대금리로 용자받도록 사전협의를 한 후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 사업별 내용>

○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은

- 계양구 방축동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4,998㎡) 규모로 체험 및 학습 위주의 전문어린이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10년 지방채는 39억 5천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2009년도 기승인분 200억원 중 100억원은 사업의 공정상태 및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금년 12월초에 발행예정으로 있음.

년 도	신 청	승인 또는 한도내	발 행	비 고
계(억원)	300	300	200	
2008년	100	100	100	
2009년	200	200	100	

○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 인천 서북부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한 효율적인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사업 완료예정으로
- 2010년 지방채는 총 101억 3백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년 도	신 청	승 인	발 행	비 고
계(억원)	287	287	287	
2001	40	40	40	
2007	144	144	144	
2009	103	103	103	

○ ‘연희공원 조성사업’은

-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 대회 주경기장과 함께 우리시의 대표적인 휴게공간 마련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으로서 총 사업비 규모가 1,892억원으로 2014년 준공 예정임.

- 2010년 지방채는 200억원 전액을 공공자금기금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2009년 2차 변경계획(2009. 9월)에서 승인한 277억원은 사업공정 계획에 의거 금년 12월초에 발행 예정으로 있음.

년 도	신 청	승 인	발 행	비 고
계(억원)	505	505	228	
2004년	50	50	50	
2005년	40	40	40	
2007년	100	100	100	
2008년	38	38	38	
2009년	277	277	-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는 총 3,500억원으로 (공자기금 104,645백만원 포함) 동 사업의 총 규모가 1조 5,170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2008년도 이월분 400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1,550억원은 사업초기 토지보상비가 집중 투입되어야 하나 보상시기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금년 12월 중 발행할 예정으로 있음.

년 도	신 청	승인 또는 한도내	발 행	비 고
계(억원)	2,550	2,550	1,000	※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지방채 발행지연, 2009년 4분기에 전액 발행예정
2008년	400	400	-	
2009년	2,150	2,150	1,000	

<지방채 발행시기 관련>

- 지방채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은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적으로 사업이 즉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별·시기별로 지방채 발행을 단계별로 승인 받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과 관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유형별(1~3유형)로 채무상환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일반재원 등의 구분으로 지방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 시의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08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8%로 유형별 구분 기준 30%이하에 해당되어 **1유형**으로 일반재원 대비 10%이하로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시의 2009년말 채무잔액 추정치는 2조 3,326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09, 2회추경기준) 29.4%로 유형별 구분기준 **1유형**에 해당되고 있으며, 채무액이 증가하여 채무비율이 30% 이상으로 변경될 시에는 2유형에 해당되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일반재원의 5%이하로 줄어들 수 있음.

《 자치단체별 유형구분 기준 》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채무상환비율	10% 이하	10%초과~20%이하	20% 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30% 이하	30%초과~60%이하	60% 초과

《 유형별 지방채 한도액 설정 》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일반재원 대비	10% 이하	5% 이하	0

※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정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교부금+부동산교부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김용재, 유천호,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등과 같은 공적자금을 확대하여 차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검단우회도로 오류지구간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산단개발 주체로 도개공과 LH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사업성격상 국비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 금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시 금고등과 미리 협의하였어야 했음. 이율 및 상환기간 기재 없이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물관리과장 임원걸, 도로과장 이연창
 - 재원 측면에서 시비 및 지방채를 안배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 공적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을 우선확보하고 그 외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이율 등 최적의 조건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함.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김용재, 유천호,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석위원 전원찬성 : 윤지상, 김소림, 김용재, 유천호,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부. 끝.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채규모	기채선	자금종류	발행조건		
					이율 (%)	상환기간 (거치-상환)	상환채원
총 계	18건	496,753					
일반회계	10건	75,553					
아청소년과	인천어린이과학관건립	3,95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변동)	5-10	시비
도로과	검단우회도로 ~ 오류지구간 도로개설	4,303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변동)	5-10	시비
		5,8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50	5-10	시비
	신흥동 삼익APT ~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변동)	5-10	시비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4,500	민간자금	민간자금			시비
	축항로 ~ 제2준설토 투기장간 도로개설	3,000	민간자금	민간자금			시비
용유무의개발과	북측유수지 ~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5,0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50	5-10	시비
공녹지과	연희공원 조성	2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변동)	5-10	시비
	월미공원 조성	7,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변동)	5-10	시비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2,0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50	5-10	시비
기특별회계	4건	387,000					
아시경기대회지원본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104,645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변동)	5-10	시비
		245,355	민간자금	민간자금			시비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32,000	수익자	민간자금	2.50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5,000	수익자	민간자금	2.50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공기업체	4건	34,200					
물관리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건설사업	11,2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00	5-10	시비
	공촌,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	8,0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00	5-10	시비
	월미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7,0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00	5-10	시비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2단계시설공사	8,000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3.00	5-10	시비

□ 지역개발채권 발행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발행액	차입선	연리 (%)	상환기간	비고
1	지역개발채권 발행	110,000	매출공채	2.50	5년후 일시상환	